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5판

---

**2023. 6. 1.**



**충청방역대책본부**

# 목 차

I. 사업개요 .....	1
□ 법적근거 .....	1
II. 지원내용 .....	1
□ 개정지침 적용 .....	1
□ 지원대상 .....	1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2
□ 지원기준 .....	2
III. 신청방법 및 절차 .....	3
□ 신청방법 .....	3
□ 처리절차 .....	3
IV. 행정사항 .....	4
□ 기관별 업무분장 .....	4
【 별첨. 관련 서식 】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6
2.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결정 현황 .....	7
3.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안내문 .....	8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9
5. 유급휴가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	10
6. 코로나19 격리참여 신청명단 확인서 .....	11
[참고1] 관련 법령 및 고시 .....	12
[참고2]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	15
[참고3] 코로나19 격리참여자 신청·등록 안내 .....	1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제5판 개정전후 대비표

목차	4-3판	5판	개정내용 및 사유
지 원 내 용	<p>□ 개정지침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3.10.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예시) 검체채취 3.9. 격리통보 (전화, 문서, 문자 등) 3.10. 입원·격리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3.10. → 3.10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div> <p>☞ '23.1.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p>	<p>□ 개정지침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6.1. 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자 포함</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예시) 검체채취 5.31. 양성통지(문자) 6.1, 격리 종료일 6.4. 24시                 </div> <p>☞ '23.5.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p>	<p>제 5판 지침 개정('23.6.1.)으로 인한 지침 적용일 변경</p> <p>격리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7일→5일)에 따른 적용대상 변경</p>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li> <li>-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동일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미포함)</li> <li>* 법인인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연금 가입자 수 기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li> <li>*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li> </ul>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①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②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에게 ③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li> <li>① (근로자 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li> <li>* 동일 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미포함</li> <li>- 법인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li> <li>-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수 확인 가능</li> <li>② (격리 참여자) 코로나19 확진자 중 역학조사 및 관할 보건소 신청을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된 자(격리참여자로 등록된 공동격리자 포함)</li> <li>* 입원자는 별도 격리참여 등록 없이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확인 가능</li> <li>③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유급휴가에 미해당</li> </ul>	<p>격리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됨(7일→5일)에 따른 '격리통지'삭제 및 '격리참여'로 변경</p>

목차	4-3판	5판	개정내용 및 사유
	<p><b>□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인 경우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음</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li> <li>②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li> <li>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li> </ol> </div> <p><b>□ 지원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li> <li>* 입원·격리통지서에 기재된 기간</li> <li>**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li> <li>○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대해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일급 45,000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제공 촉진 및 지원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급에 관계없이 일 상한액(45,000원) 예외 지원</li> </ul> </li> <li>○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일수 × 4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까지만 인정</li> </ul> </li> </ul>	<p><b>□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인 경우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음</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li> <li>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를 지급받은자</li> <li>③ 격리 미이행자</li> </ol> </div> <p><b>□ 지원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간)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li> <li>○ (지원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일급 45,000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제공 촉진 및 지원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급에 관계없이 일 상한액(45,000원) 예외 지원</li> </ul> </li> <li>○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일수 x 4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 격리이행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까지만 인정</li> </ul> </li> </ul>	<p>격리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에 따른 격리방역수칙 위반 식재, 격리 이행여부로 변경</p> <p>격리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에 따라 격리통지 → 격리이행으로 변경</p>
	<p><b>□ 신청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지사</li> <li>○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li> </ul> <p>* (예) 격리기간이 1.1~ 1.7.인 경우, 신청기간은 1.8.부터 90일 이내</p>	<p><b>□ 신청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지사</li> <li>○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li> </ul> <p>* (예) 격리기간이 6.1~ 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p>	

목차	4-3판	5판	개정내용 및 사유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구비서류)</li> <li>-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li> <li>-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li> <li>-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li> <li>- 사업장 통장사본</li> <li>-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li> <li>* 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구비서류)</li> <li>-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li> <li>-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li> <li>-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li> <li>- 사업장 통장사본</li> <li>-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li> <li>* 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한함</li> </ul>	<p>격리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문구 수정 - 격리된 → 격리</p>
행정사항	<p>□ 기관별 업무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공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세부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지급, 사후관리 등 업무 대행</li> <li>- 유급휴가비용 지원 관련 사업장 홍보 실시</li> <li>○ (지자체 보건부서) 유급휴가비용 확인 요청 [서식 제6호] 회신</li> <li>- 대상자 인적사항, 격리기간 현황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li> <li>○ (질병관리청) “지원대상 여부” 정보 등 확인하여 최종 지급 결정</li> </ul>	<p>□ 기관별 업무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수행 및 관리</li> <li>- 신청접수 및 지원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 사후관리, 홍보실시</li> <li>○ (지자체 보건부서) 격리참여자 신청등록 및 관리</li> <li>- 온라인·전화·방문(대리)을 통한 격리참여자 신청접수 및 시스템 등록</li> <li>- 코로나19 격리참여자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격리참여자 신청명단 확인서’를 공문으로 통지</li> <li>○ (질병관리청) 사업 개편방안 마련, 총괄 관리 및 감독, 지원금 최종 지급·환수 결정</li> </ul>	<p>격리위반 명단 확인이 아닌 격리참여자 신청 여부 확인으로 변경</p>
서식	<p>[서식 제6호]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조회 회신</p>	<p>[서식 제3호] <u>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미해당 안내문 내용 변경</u> [서식 제4호]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내용변경 [서식 제6호] <u>코로나19 격리참여자 신청명단 확인서로 서식변경</u></p>	
참고		<p>[참고2] 본문 등 변경사항 반영 [참고3] <u>코로나19 격리참여자 신청·등록 안내</u></p>	

## I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질병관리청고시 제2022-14호(2022.7.8.)

## II

# 지원내용

### □ 개정지침 적용

- '23. 6. 1. 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자 포함

(예시) 검체채취 5.31, 양성통지(문자) 6.1, 격리종료일 6.4. 24시

※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 지원대상

- 근로자가 ①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②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에게 ③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① (근로자 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동일 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미포함  
- 법인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수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수 확인 가능
- ② (격리 참여자) 코로나19 확진자 중 역학조사 및 관할 보건소 신청을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된 자(격리참여자로 등록된 공동격리자 포함)  
\* 입원자는 입·퇴원확인서로 격리 참여 확인 같음
- ③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유급휴가에 미해당

##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를 지급받은자
- 격리 미이행자
  - \* 유급휴가비용 지급 완료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 지원기준

- (지원기간)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지원금액)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단, 일급 45,000원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가 제공 촉진 및 지원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급에 관계없이 일 상한액(45,000원) 예외 지원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 45,000원
  - 1건 격리이행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까지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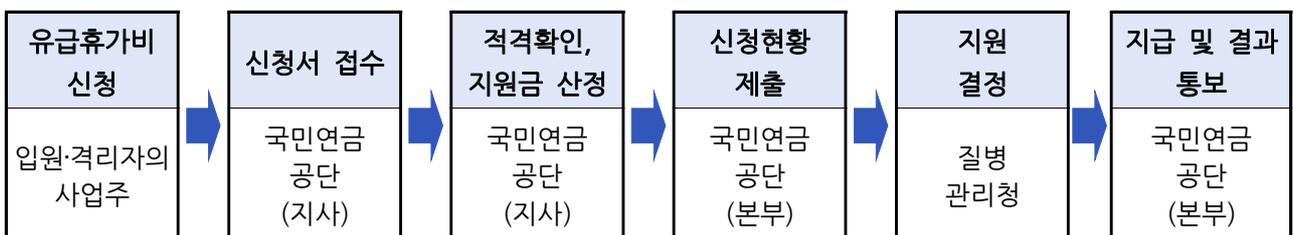
### Ⅲ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 종료일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 (신청 구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입·퇴원 확인서, 양성 확인 통지 문자, 격리참여자 등록 확인 문자 (필요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가능)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서식 제4호]
    - \* 종전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수 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위 확인서로 같음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서식 제5호]
  -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신청 후 출력

### □ 처리절차



## □ 기관별 업무분장

## ① 국민연금공단 :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수행 및 관리

-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류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지원결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급 등
  -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격리참여 등록 확인 가능
  - 지급 결정액 산정 및 지급 결정 요청[서식 제2호]
  - 지원금 신청자에게 지급대상 여부 통지[서식 제3호]
  - 지원결정에 따라 유급휴가비용 지급
- (세부계획 수립) 유급휴가비용 신청·지급 등 업무 수행을 위한 편람 제작 및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 (사후관리) 부정이익금 환수 및 관리, 사업자료 관리·제공 등
  - 생활지원비 간 중복지급, 과다지급, 착오지급 등 환수 및 관리
  - 부정수급 조사결과에 따른 부정이익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납부
  - 자진신고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
  - 유급휴가비 지원 건수, 총 금액, 내역 등 사업관련 자료 관리 및 제공
- (홍보실시)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홍보 및 안내

## ② 지자체 보건소 : 격리참여자 신청등록 및 관리

- (신청 관리) 온라인·전화·방문(대리)을 통한 격리참여자 신청접수 및 시스템 등록
- (명단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코로나19 격리참여자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격리참여 신청명단 확인서'를 공문으로 통지[서식 제6호]

③ 질병관리청 : 사업 개편방안 마련, 총괄관리 및 감독, 지원금 최종 지급·환수 결정

- (사업 개편)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방역정책에 따라 사업 개편 방안 마련 및 지침 개편
- (사업 총괄관리 및 감독) 사업 집행점검(서면보고, 감사 등) 실시, 사업계획서·업무편람 승인,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 (지원금 결정) 유급휴가비 지원금 최종 지급 결정 통보 및 부정수급 등 적발 시 최종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 등 결정

[서식 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개정 2020.12.30.>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에는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격리 세부사항	입원·격리 시작일	입원·격리 종료일		
	총 입원·격리기간 ( )일			
	대상 감염병명			
	입원·격리 종류 [ ] 의료기관 입원·격리 [ ] 자가 격리			
	의료기관 경우	입원·격리인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산출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3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  지원,  미해당 ] 안내문**

신청자	사업장명		사업주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입원·격리자	성 명		생년월일		격리기간	
	주 소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지 원 결 정 내 용	<input type="checkbox"/> 지원	지원 종류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지원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			
	지원 안내	<p>※ 위 지원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간을 의미합니다.</p> <p>*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대상이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유급휴가 지원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신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li>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li> <li>• 이후 해당 근로자가 동 기간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받은 경우, ② 신청대상 근로자의 격리 미이행이 적발된 경우, ③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셔야 하며, 사후조사 결과 위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li> </ul>				
<input type="checkbox"/> 지원미해당	미해당사유					
<p><input type="checkbox"/> 귀하가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정보는 유급휴가비용 신청 적격확인 업무에 한하여 활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국민연금공단이사장</b></p> <p style="text-align: center;">문의 전화번호 :</p>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입원 또는 격리를 이행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사업장명		사업주명	
근로자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유급휴가 기간(일수)	~ ( 일)		
유급휴가 사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1. 사업주는 위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대상이 아님
2. 근로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참여에 등록하여 격리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동일한 사유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지 않았고 향후에도 지원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                                (서명)

근로자        :                                (서명)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유급휴가 지원사업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주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근로자, 사업장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만**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유급휴가 기간 내 근로자에게 **무급휴가** 지시

나. 유급휴가 기간 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따른 휴가 지시

다. 유급휴가 기간 내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재택근무·원격근무 등 포함**)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업주는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제출 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경우에만**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4) 사업주는 **실제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실제 제공한 유급휴가 기간보다 더 긴 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나. 실제 **일급을 전부 제공하지 않은 경우**(예 : 일급의 70%만 지급한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지원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에 의거 사기죄 성립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자 : (서명)

# 코로나19 격리참여 신청명단 확인서

(엑셀로 작성)

귀 연금공단이 조회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조회요청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격리기간		보건소 확인	
			시작일	종료일	격리참여 신청여부	비고
공단작성	공단작성	공단작성	공단작성	공단작성	보건소작성	보건소작성

회신기관 : ○○○시/군 ○○○보건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23조의3(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제1조(지원대상)**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다음 각 호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2조(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2.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 단,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제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2-14호, 2022. 7.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5일 이후에 격리 통지된 입원·격리자부터 적용한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간생략)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중간생략)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목적·종류·대상·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입원 또는 격리 참여에 등록하고 이행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1)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에게 2)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1) 코로나19 확진자 중 역학조사 및 관할 보건소 신청을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된 자(격리참여자로 등록된 공동격리자 포함)
-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대상이 아님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 동일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미포함
- 법인인 경우 사업장 근로자 수(연금 가입자 수 기준)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 사립학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제외 대상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 격리 미이행자
- \* 유급휴가비용 지급 완료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조치

□ 지원금액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5일)  
※ 단, 일급 45,000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제공 촉진 및 지원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급에 관계없이 일 상한액(45,000원) 예외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6.1. ~ 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 확인가능한 서류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⑤ 통장사본 등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 확인서로 같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예) '22년 격리자와 23.1.1일 이후 격리자의 격리기간이 겹쳐 혼재된 경우, 마지막 격리자를 기준으로 '23년 산정기준표 적용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③ 격리 미이행자
  -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 대상

- '23.6.1.이후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여 격리기간 동안 성실히 격리를 이행하려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양성 확인 통지 문자의 URL 링크를 따라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며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 체크
- (역학조사중 신청) 자기기입식 조사서 붙음 확진자 대상 보건소 역학조사 중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전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역학조사중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관할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위임 대리방문 가능)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 (공동격리자 격리참여 신청) 돌봄이 필요한 격리참여자에 대한 공동격리 신청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격리참여 등록 신청

▶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확진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참여 가능

- (신청기한) 양성 확인 통지일 익일까지 등록 신청

□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절차

